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 6 차 국 방 위 원 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초급간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허용〉
■ 황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441호)

2024. 11.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류 승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 참고자료	
1.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 보충역 복무자 보수 현황	9
2. 초급간부 처우개선 확대 관련 현황	1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황희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8. 30.
3. 회부연월일 : 2024. 9.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의무복무를 마친 후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적응하기 위한 자산을 형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역병 등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을 기준으로 국가는 가입자가 입금한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의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대상이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장교나 부사관의 경우 초임 간부로서 급여가 높지 않은 경우에도 적금에 가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임용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장교 또는 부사관도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초임 간부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복무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대상에 초급간부인 장교나 부사관 중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2제1항).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9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① 국가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지요원, 대체복무요원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79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① -- ----- -----대체복무요원,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 장교나 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장병내일준비적금은 현역병, 사회복지요원 등이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적금에 가입하여 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가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전역 후 일정 규모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임.¹⁾

1) 「병역법」 제79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① 국가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지요원, 대체복무요원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연도별 재정지원 현황>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예정)
적금 납입한도액	40만원	40만원	40만원	55만원
매칭비율	(원리금의) 33%	(원리금의) 71%	(원금의) 100%	(원금의) 100%
월 최대 지원금액	14.1만원	30만원	40만원	55만원

* 자료 : 병무청

□ 장병내일준비적금 제도는 2018년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을 대상²⁾으로 최초 시행되었으며, 제도 시행 기간동안 꾸준히 제도 수혜 대상 추가³⁾, 정부 재정지원 범위를 확대해온 결과 현역병 가입율이 99%에 달하는 등 제도 효과성은 검증된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장교나 부사관 중 최초 임용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초급간부로 보고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대상에 이들을 포함하여 정부가 현역병과 동일한 재정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초급간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에서 군 복무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초급간부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인력 부족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임.

2)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대상 :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 (경찰,소방,해양경찰),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3) 2021. 4월 대체복무요원까지 지원 대상 확대

<초급간부 급여 수준 현황>

구 분		장교 소위	부서관 하사	병사(병장기준)
월 급여	1호봉	· 기본급 1,892,400원 · 기타수당 822,095원 - 세전 : 2,714,495 - 세후 : 2,605,265	· 기본급 1,877,000원 · 기타수당 785,512원 - 세전 : 2,662,512 - 세후 : 2,555,142	· 봉급 125만원 · 자산형성지원금 40만원 ⁴⁾ - 비과세 : 1,650,000
	2호봉	· 기본급 1,979,600원 · 기타수당 830,815원 - 세전 : 2,810,415 - 세후 : 2,698,015	· 기본급 1,897,000원 · 기타수당 787,512원 - 세전 : 2,684,512 - 세후 : 2,577,132	

* 자료 : 국방부

□ 다만, 개정안에서는 임용된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모든 장교 또는 부서관을 장병내일준비적금 추가 가입 대상자로 규정함으로써, 군의관, 군법무관, 군방역수의사,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로 장교에 편입된 자 등 초임 계급이 중위 이상으로 임용된 자들까지 대상에 포함되는 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초급간부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초임 계급이 중위 이상인 장교를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입법 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보임.

- 소위(1호봉: 1,892,400원)와 중위(1호봉: 2,041,400원) 간 봉급 차이가 약 15만원 정도인 바, 군의관 등 초임 시 중위 이상으로 임용되는 대상자를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면 정부 재정

4) 2024년 기준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한도액인 40만원 가입 시 지원금액이며, 2025년부터 가입한도액 및 지원금은 55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지원 기간 동안 실질적인 수입면에서 계급 간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점도 참고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소위, 하사 이상 계급으로 임용되는 간부>

구 분		임용 법률 근거	임용시 계급	임용시 보수 (기타수당)
군 의 관	일반의	군인사법제12조	중위1호봉	기본급 2,041,400원 기타수당 853,735원
	전문의		대위1호봉	기본급 2,581,100원 기타수당 1,156,658원
군법무관		군인사법제12조	중위1호봉 *민간경력에 따라 상이	기본급 2,041,400원 기타수당 853,735원
5급 시험 합격자		군인사법제12조	중위1호봉	기본급 2,041,400원 기타수당 853,735원
수의장교		군인사법제12조	중위1호봉	기본급 2,041,400원 기타수당 853,735원
군종장교		군인사법제12조	중위1호봉 *민간경력에 따라 상이	기본급 2,041,400원 기타수당 853,735원

* 자료 : 국방부

<소위, 하사 이상 계급으로 임용되는 간부 인원 현황>

구 분	2022년 임용자	2023년 임용자	2024년 임용자	비고
군 의 관	715명	771명	824명	
군법무관	107명	91명	129명	
5급 시험 합격자	2명	4명	2명	5급 공채 합격자 중 기본병과장교로 임명한 대상자임
수의장교	37명	41명	26명	
군종장교	40명	55명	43명	
합 계	901명	962명	1,024명	

* 자료 : 국방부

□ 또한,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본 개정안을 수용하여 초임간부의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을 허용하면, 현재 현역병에 대한 지원 기준⁵⁾을 적용하였을 때 연간 약 1,858억원 가량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도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법 개정시 초임간부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 예상>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장 교	96,650백만원	1,320만 원(55만 원*24月) × 7,322명(최근 3년 평균)
부 사 관	72,930백만원	1,320만 원(55만 원*24月) × 5,525명(최근 3년 평균)
신분전환 (병→간부)	6,336백만원	330만 원(55만 원*6月) × 1,920명(최근 3년 평균)
합 계	1,858억원	

* 자료 : 국방부

□ 한편, 「병역법 시행령」⁶⁾에서 정부 재정지원금 지급 기간을 장병 내일준비적금 입금일부터 만기일까지로 정하고 있는 반면, 지급 기간의 한도는 정하지 않고 있는 바, 장교, 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령에 정부 재정지원금 지급 기간의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⁷⁾

5) 적금가입기간(24개월), 월 납입한도액(55만원), 지원금 매칭비율(납입금액의 100%)

6) 「병역법 시행령」 제158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① 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이하 “장병내일준비적금”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은 입금일부터 만기일(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전역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종료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날까지의 장병내일준비적금 입금액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7) 현재 국방부, 병무청 등 관련 정부 기관과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취급하는 은행(14개 은행)간에

＜「군인사법」상 간부별 의무복무기간 현황＞

구 분	장기복무 장 교	단기복무 장 교	장기복무 부사관	단기복무 부사관
복무기간	10년	3년	7년	4년

* 자료 : 국방부

□ 마지막으로 개정안에서는 적용대상의 범위와 관련한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가입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적용례를 추가 규정할 필요가 있음.⁸⁾

□ 개정안과 관련하여 병무청은 장교는 아니지만 초급 간부에 준하는 보수 체계를 적용⁹⁾받고 있는 공중보건 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 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는 군의관, 군법무관 등의 경우에도 유사한 의무복무 이행자 간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적금 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며(참고자료1. 참조),

기획재정부는 2022년~2024년 기준 초급간부 처우개선을 위하여 단기복무장려금 및 당직비를 2배 인상하고 시간외수당 상한을 늘리는(월 57시간 → 월 100시간) 등 재정지원을 확대¹⁰⁾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참고자료2. 참조).

문 의 처

02)6788-5307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적립기간(최소 1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을 정하고 있음.

8) 국방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임용된 인원부터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9) <참고자료1> 공중보건 의사, 공익법무관 등 보충역 복무자 보수 현황

10) <참고자료2> 초급간부 처우개선 확대 관련 현황 참조

※ <참고자료1>

□ 공중보건 의사, 공익법무관 등 보충역 복무자 보수 현황

- 공중보건 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 의사 보수 기준

(농어촌 의료법 시행령 별표, 병역판정검사전담 의사 운영규정 별표)

보 수	공중보건의사의 구분	근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봉 급	전문의 수련경력이 없는 사람	중위 1호봉	중위 2호봉	중위 3호봉
	인턴 수련 1년 이수자	중위 1호봉	중위 2호봉	대위 1호봉
	레지던트 수련 1년 이수자	중위 2호봉	대위 1호봉	대위 2호봉
	레지던트 수련 2년 이수자	대위 1호봉	대위 2호봉	대위 3호봉
	레지던트 수련 3년 이수자	대위 2호봉	대위 3호봉	대위 4호봉
	레지던트 수련 4년 이수자	대위 3호봉	대위 4호봉	대위 5호봉
가 족 수 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진 료 수 당	예산의 범위에서 월 2만원 이하 지급			

* 업무(검진)활동장려금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900,000원 지급(공중보건의사, 전담의 운영지침)

- 공익법무관 보수 기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복무기간 보수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봉급	중위 1호봉	중위 2호봉	중위3호봉	중위4호봉	중위5호봉	중위6호봉
공익법무관수당	월봉급액의 8퍼센트						
정근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명절휴가비							

* 법무활동장려금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50,000원 지급(공익법무관 관리지침)

- 공중방역수의사 보수 기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보 수 구 분	근무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봉 급	중위 1호봉	중위 2호봉	중위 3호봉
가 족 수 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가축방역수당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만원 이하 지급		

* 방역활동장려금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600,000원 지급(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

※ <참고자료2>

□ 초급간부 처우개선 확대 관련 현황

지 원 내 용		2022년	2023년	2024년
예 산		1,872억원	2,555억원	4,276억원
○ 단기복무장려금	장교	600만원	900만원	1,200만원
	부사관	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
○ 학군사관후보생 학업생활지원금		-	8만원×8개월	18만원×10개월
○ 간부활동비	소대장	6만원/월	12만원/월	
	주임원사	20만원/월	30만원/월	
○ 시간외수당 (GP·GOP 등 격오지 근무자)		57시간	57시간	100시간
○ 당직비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
○ 주택수당		월 8만원 (3년이상 간부)	월 16만원 (3년이상 간부)	월 16만원 (+3년미만 간부)

· 자료 : 기획재정부